

# 각국의 안전관계 법령

— 프랑스편 —

박 창 복

〈위험관리정보센터 차장〉

## 1. 프랑스의 법체계

### 가. 프랑스 법의 특징

#### (1) 정부의 법령제정 권한

현재의 프랑스 헌법(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34조에 정해진 법률사항에 대해서만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5공화국 헌법34조에 정해져 있는 법률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법률에서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것.

① 공민권, 기본적 인권의 보장, 국방에 관한 국민의 의무

② 국정, 신분, 능력, 부부재산제, 상속 및 증여

③ 형법, 형사수속, 특사, 재판제도의 창설, 사법관의 신분

④ 조세에 관한 기준, 세율, 징수방법

⑤ 국회 및 지방의회의 선거 제도

⑥ 새로운 종류의 공영건물 창설

⑦ 국가공무원에 대한 기본적

### 보장

⑧ 기업의 국유화 및 민영화

(내) 법률에서는 기본적 원칙만을 규정하고, 세목은 행정이 규정하는 것.

① 국방조직

② 지방자치, 지방자치제의 권한 및 재정

③ 교육

④ 소유권법, 민사·상사법

⑤ 노동법, 사회보장법

⑥ 국가예산

⑦ 나라의 경제, 사회활동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

상기한 이외의 분야에 관해서는 수상 및 대통령이 제정하는 데크레(decret : 수상령,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 있어서는 상당히 넓은 분야에서 법률에 대신하여 데크레가 제정되고 있다. 또, 데크레 자체는 법률이 아니지만 제5공화국 헌법(1958년 제정) 이전의 법률로, 현재는 법률사항이 아닌 분야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률은 데크레로 개폐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법률사항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특정사항에 관해 국회가 일정한 기관을 정하여 입법을 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제5공화국 헌법38조)한 등, 입법면에 정부가 맡은 역할이 상당히 큰 것이 특징이다.

역시, 데크레에서는 일본의 정령에 상당하는 단순한 데크레와 콘세이유·데타(행정재판소와 정부에 대해 조언을 행하는 프랑스 특유의 기관)의 사후승인을 받은 데크레·안·콘세이유·데타의 2종류가 있어 후자는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또, 행정부가 제정하는 보다 하위의 법령·규칙으로 아레테(Arrete : 성령)이 있다. 아레테는 그 수가 많고, 분량도 많으므로 법령집에는 통상 게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법률의 시행 규칙에 상당하는 규정은 통상 아레테의 형태로 제정되므로 실무상 상당히 중요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 데크레나 아레테는 빈번히 개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2) 성문법주의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성문법 중심의 대륙법계의 법체계를 가진 나라의 대표로, 이 점에서 관습, 관례법을 중심으로 법체계를 형성해 온 영국이나 미국 등의 영미법계의 나라와는 다르다. 단, 프랑스에 있어서도 법령·규칙이 법전의 형태로 정리되어진 것은 프랑스혁명 이후로, 그 이전은 봉건영주의 영지마다 다른 관습법과 로마법이 적용되어 로마법의 영향이 강했던 남부지역에 비해 북부의 농업지대에서는 관습법이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 나. 프랑스 진출시 필요한 인·허가사항

#### (1) 건축허가

(Permis de construire)

프랑스에서는 건축허가의 요건 및 수속에 관해서 도시계획법전에 규정되어 있다. 건축허가는 민간공사이던 공공공사이던 또는 신축이던 증·개축이던 불문하고 필요하다. 도시계획법전에 기초, 도시계획(Plan d'urbanisme)이 정해져 있는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에 정해져 있는 상세한 건축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도시계획에 정해져 있는 용도와 계획하고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다른 경우 지목의 변경이 필요하다.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시구동에 대해 변경신청을 하지만, 지목변경의 공시기간(2개월) 중에 지역주민으로부터 독립된 복수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목변경은 허가되지 않

는다. 따라서 지목변경이 필요할 것 같은 개발안건은 지원자 치체 및 지역주민의 일치된 협력이 없으면 실제상 불가능하다.

또, 건축물의 종류가 지목과 일치한 경우에도 역사적 건축물로부터 일정 범위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경관을 바꾸지 않기 위해 건축물의 외관을 바꿀 것 같은 건축물은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건축허가는 도시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Plan d'occupation des sols)이 정해져 있고, 시구동에 있어서는 국가시설이나 핵연료시설, 석유기지, 수송시설 등 국가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정시설을 제외하고는 시구동의 권한이다. 단, 건축허가 신청 자체는 어떤 경우도 시구동에 제출한다. 시구동에 권한이 있는 경우 시구동장은 1주일 이내에 신청서를 국가 감사관에게 송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건축허가를 주는 여부를 결정한다. 역시, 시구동장과 국가의 감사관 사이에 의견이 달라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허가를 주는 판단은 200호가 넘는 거주용 건축물이나 200제곱미터가 넘는 사무소 또는 상공업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행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다(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나 관계하는 국가의 관청이 다수에 걸쳐진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각각 1개월~4개월의 연장이 인정된다 : 도시계획법전

R421-18).

실무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는 통상 3개월 이내에 거의 자동적으로 교부되고 있다.

건축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간이고 1년 이내에 착공되지 않는 경우 및 공사가 1년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건축이 완료된 경우에는 시구동의 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은 후 시장 동장으로부터 사용허가(Autorization d'ouverture)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역시, 10개월 이상 폐쇄된 건축물을 재사용하는 경우도 사용허가가 필요하다.).

## 2. 프랑스의 안전·방재 에 관한 법령규칙

### 가. 방화·방폭에 관한 법령규칙의 개요

#### (1) 방화·방폭에 관한 법령규칙

프랑스의 건축물의 방화·방폭에 관한 법령·규칙으로는 크게 나눠 다음 3가지의 체계가 있다.

(가) 건축물의 보호 관점에서의 제규제 : 건축법전 및 그 밑에 제정되어 있는 제규칙(주로 내무성령, 일부 통달의 형태로 나오는 케이스도 있다.)

(나) 도시계획의 관점에서의 제규제 : 도시계획법전 및 그 밑에 제정되어 있는 제규칙(주로 내무성령의 형태로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다.)

(다) 노동자의 안전의 관점에서의 제규제 : 노동법전으로 각각 정리되어져 있다.

상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법전 및 그 밑에 제정되어 있는 제규칙에서 실무상 필요한 제규칙은 거의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 (2) 방화·방폭에 관한 법령규칙의 특징

프랑스의 방화·방폭관련규제에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① 정성령에서 세부까지 정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다.

프랑스에서는 데크레(정령)이나 아레테(성령) 또는 서큐레르(통달)의 정성령에서 비교적 세부까지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 규격 등의 민간기준에 준거하고 있는 것은 최근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재료나 제품규격이 중심으로, 방화에 관한 규제 그것이 민간기준에 준거하고 있는 것은 영국 아니 미국에 비해 적다.

② 소화설비보다도 방화구획에 중점을 둔 규제체계로 되어 있다.

유럽의 대륙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방화구획 중심의 규제체계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소화설비에 관해서는 고층건축물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상세한 규제는 행해지지 않고 있다.

실제 건축물에 관해서도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프링클러 등 대규모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드물고(별4개급 고급호텔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은 보통), 통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방화문만이 눈에 띠는 경우가 많다.

③ 운용면은 융통성이 많다. 정성령에 상당히 상세한 규정

이 있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제출하는 것은 1/100의 견양도 등 약간의 서류만으로(도시계획법전 R421-2에서는 사이드플랜 및 3방향에서의 외벽 경관도만을 첨부서류로 기재하고 있다.) 서류상으로는 규정이 모두 지켜지고 있는지 어떤지 판단할 수 없다. 그 때문에 반드시 모든 규정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도 건축허가가 나온다. 또, 준공시점에서 시구동의 안전위원회가 행하는 완료검사도 그다지 엄격한 것이 아니다.

그 때문에 설계실무에서는 법령면의 규제는 융통성있는 적용을 전제로 꽤 자유로운 설계가 행해지고 있다.

④ 규제의 운용상, 민간 기술관리회사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 나. 방화·방폭에 관한 법령규칙과 규정범위

### (1) 건축·주거법전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 habitation)

건축법전은 건축에 관한 법률과 데크레 등 법령규칙을 집대성한 것이다. 건축물의 방화·방재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전의 제1편 제2부에 기재되어 있다. 건축법전에는 법률외에 데크레·안·콘세이유·데타 및 데크레가 계재되어 있다. 역시, 건축법전에는 제2부 제1장의 ‘화재에 대한 보호, 건축재료의 분류’와 같이 법률은 조문이 아니라 데크레·안·콘세이유·데타(R121-1에서 R121-13)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데크레·안·콘세이유데타나 데크레에는 법률보다도 상세한 규정이 있지만 데크레 단위의 규정에는 실무상 필요한 점 까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통상이다.

예를 들면, ‘화재에 대한 보호, 건축재료의 분류’에 관한 데크레·안·콘세이유·데타 R121-2에서는 ‘화재시 내화성능’은 아래의 2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가) 가연성, 즉 불에 던져진 경우, 화재의 세력을 더하는 것.

(나) 내화성, 즉 화재의 경우에도 일정 시간은 건축재료로서 상응하는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내화성능시험의 방법이나 내화성이라 인정된 건축재료의 이름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2) 화재에 대한 안전에 관한 내무성령(통상 간단히 E.R.P라 불린다.)

건축법전 R123-12에서 화재에 대한 안전에 관해 건축물이 가져야만 할 안전성에 관하여 중앙안전심의회(commission centrale de securite)의 의견을 표시한 후에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화재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내무성령은 이 데크레에 기초해 제정되고 있다.

화재에 대한 안전에 관한 내무성령은 1965년의 것인 경우 전문, 종래의 규정을 본 내무성령의 기준에 치환하는 요지를 기재한 극히 짧은 본문(조문은 2조만) 및 상당히 많은 분량의 ‘공중용으로 주어진 건축물에서의 화재 및 폐닉의 위험에 대한

안전기준(Regelement de Securite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et de panique dans l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 통상, 단순히 안전기준(Reglement de Securite)이라 불린다'의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전기준은 모든 건축물에 공통된 총칙부분과 건축물의 용도구분마다 특칙으로 나누어져 건축물의 방화에 관련한 안전기준은 모두 이 성령 속에 규정되어 있다.

또, 1980년의 내무성령은 건축법전 R-123-12에 의해 중앙 안전위원회의 답변에 따라 공포하는 요지의 전문 및 본문(조문은 3조)과 일반기준 및 기술지침(Disposition Generale de instruction techniques)으로 이루어진다.

1965년 안전기준은 1980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타입 S, T, U(각각 도서관, 전시장, 병원 등) 및 일정 소규모 건축물(수용인원 300명 이하의 것)에 대해서 적용되고, 그 이외의 건축물은 1980년의 일반기준에 의해 규제된다.

1965년의 기준과 1980년의 기준의 가장 다른 점은 1965년의 기준이 일률 3시간으로 되어 있는 구조부분의 내화시간을 1980년판에서는 최고 1시간 밖으로 했던 반면, 방화구획에 관한 규정은 1965년의 기준에서는 방화구획으로 하는 것은 요하지 않고, 최대면적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최대 800제곱미터로 엄격히 제한된 것이다. 또, 1980년판은 스펙크에 관해서 프

랑스규격에 준거하는 것을 성령의 본문에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1965년 기준에는 없는 특징이다. 프랑스에 있어서는 기존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고쳐받을 필요가 없도록 개장해서 사용하는 케이스도 많고, 1965년의 기준은 현재도 실무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특히 허용되는 한, 앞으로 1980년의 기준을 소개한다.

(3) 고층건축물의 화재에 대한 안전에 관한 내무성령(통상, I.G.H.라 불린다.)

고층건축물의 화재에 대한 안전에 관하여 내무성령은 건축법전 R122-2에 정한 고층건축물(거주용 건축물은 50m 초과, 거주용 이외의 용도 건축물에 대하여는 28m 초과)에 대하여 요구되는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을 정리한 것이다.

### 3. 방화·방폭에 관한 요구사항

#### 가. 방화·방폭에 관한 요구사항의 총괄표

프랑스의 방화·방폭관련규정의 주요부분은 화재에 대한 안전에 관한 내무성령 및 건축물의 종류마다 제정되어 있는 관련규정속에서 규정되어 있다.

그외, 건축물의 안전의 견지에서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의 견지에서 노동법전에서도 피난설비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상당한 수의 규정이 있지만, 내무성령 단위의 기준에 달하고 있으면 노동법전상의 피난로의 규정은 지울 수 있다.

(1)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규제  
구조에 관한 규제는 거의 내무성령본칙에서 규정되어 있다. 역시, 내무성령 1965년판과 19

80년판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은 이 부분이다.

(2) 피난설비에 관한 규제  
피난에 관한 규제도 기본적으로는 내무성령본칙이 정한 것이 중심이지만 건축물의 종류마다 특칙도 있다.

(3) 화재감지·경보설비에 관한 규제

화재감지·경보설비에 관한 규제는 내무성령본칙에서 정한 것이 중심이지만, 경보설비로서 어느만큼의 설비가 필요한지는 건축물의 종류별로 다르다.

(4) 소화설비 그외에 관한 규제  
소화설비 그외에 관한 규제는 내무성령에서는 소화설비의 예시가 중심으로, 실제로 정비해야 할 내용은 건축물의 종류마다 특칙이 주체이다. ⓥ

